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5월 17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년 5월 8일 (화)

나.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2년 5월 11일 (금)

4. 관계법령

가. 「지역보건법」(법률 제9847호, 2010.12.30) 제14조

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제9조의2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9호, 2011.6.7) 제64조

5. 검토의견

- 0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는 증명 발급 및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골밀도 검사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원가인상에 따라 검사료를 인상하며, 65세 이상인 환자의 수수료 감면 규정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특수임무 유공자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수혜자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0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등에 맞게 유료 예방접종 항목 중 일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음.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14조(수수료등) 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2(수수료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5. 제3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 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